무림SP

ESG정책집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MOORIM
무림SP



CONTENTS

공 통	ESG 경영정책	1
환 경	환경경영정책	4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 정책	8
	녹색구매방침	10
사 회	인권경영정책	14
	안전경영정책	18
	공급망관리정책	2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22
지 배 구 조	윤리경영정책	26
	공정거래정책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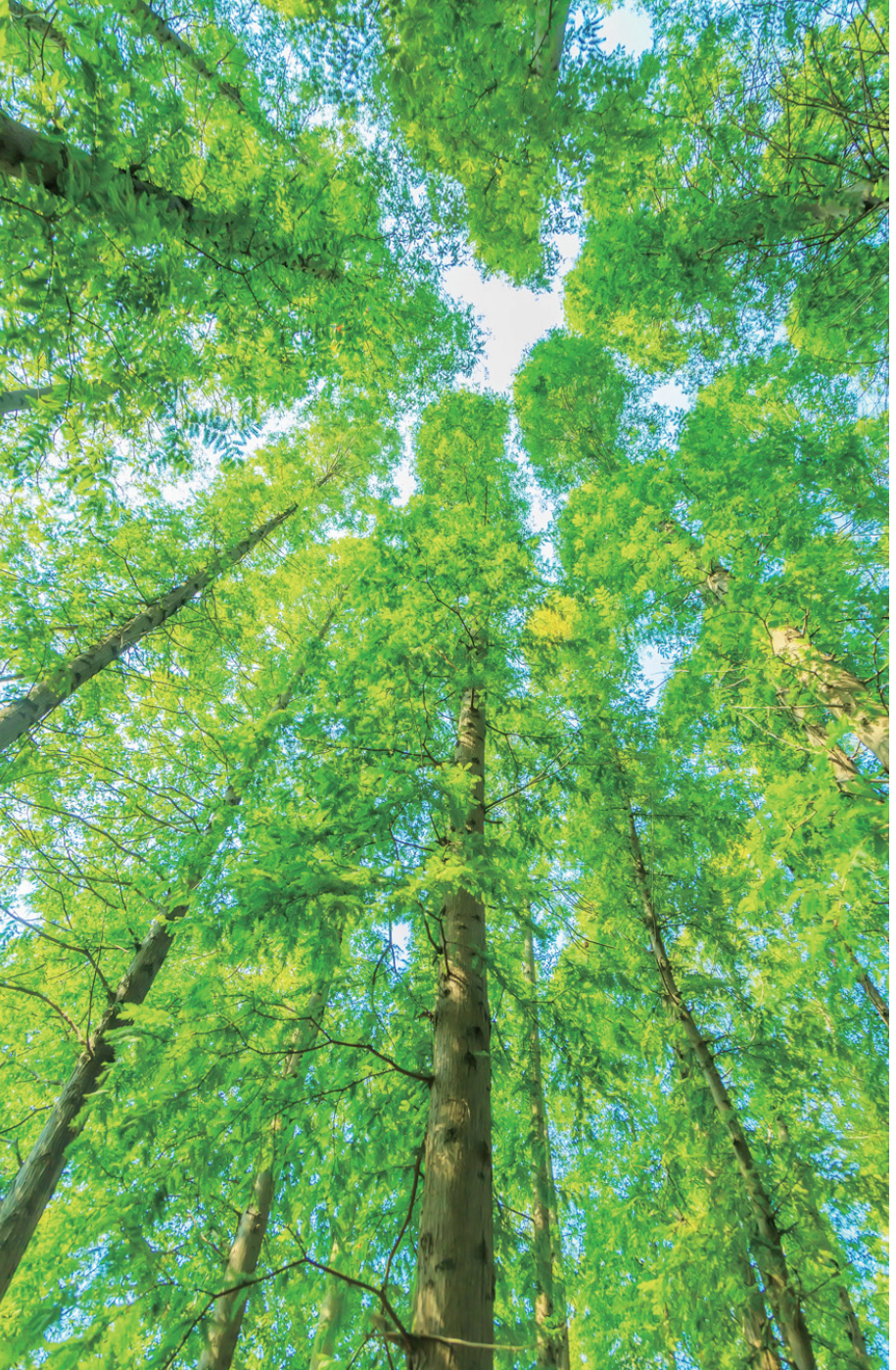
ESG 경영정책

제정일자 2024.03.13

무림SP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1.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2.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통하여 자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법규, 국제기준, 내부규정 등 기업윤리를 준수한다.
4. 협력사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5. ESG경영을 통하여 안전/보건/에너지/환경 등 경영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MOORIM 무림SP



ENVIRONMENTAL

환 경

환경경영정책

제정일자 2024.03.13 | 개정일자 [1차] 2026.04.30

무림SP는 지구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일반원칙

1.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환경 관련 국제협약 및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폐기 등의 사업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환경을 고려한 생산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최적방지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제품 사용 이후(End-of-Life) 단계에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2. 대기오염물질

-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최적방지시설을 구축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3. 폐기물 및 폐수

-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사용하며,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 처리 또는 폐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유해화학물질

-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출, 누출 등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이용 및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원부자재 및 용수

-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자재를 재생가능한 원료, 불순물이 적은 원료 등의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고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설비 또는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6.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7. 고객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

- 제품 생산에 있어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최소화하며, 사업 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천방안

1. 환경경영 시스템 운영

- 환경경영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환경경영 프로그램을 통하여 운영 및 관리하며, 모니터링 및 실적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협력사, 공급사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관하여 소통하고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직원들이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2. 생산 및 사업장 환경 관리

- 목표 관리, 교육/훈련, 지침 수립 및 관리, 내부 심사 등의 프로세스 절차를 통해 생산 및 사업장의 환경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고객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고려한 생산공정과 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생산시설 및 사업장 특성에 맞춰 환경경영 매뉴얼을 제정·운영하며, 설비 가동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MOORIM 무림SP

3. 폐기물 관리

-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법적 관리기준 및 내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며, 임직원 및 운송·처리 업체 대상으로 폐기물 보관 및 운송·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지속가능한 제품 연구개발

- 고객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5. 신규 프로젝트

- 신규 설비 도입 등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의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6.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및 기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해관계자 요구를 파악하여 경영전략을 수립·이행한다.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 TCFD 등 기후변화 관련 인증·공시 프레임워크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현황을 합리적 범위에서 공개한다.

7. 공급망 관리

- 외부업체(공급·계약·서비스 제공) 선정 시 환경관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공급망의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공급망의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 원자재 등 조달 시 녹색구매방침을 준수한다.

8. 제품 사용 완료 후 환경영향 관리

- 고객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고 제품 전 생애주기에서의(Product End-of-Life)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제품의 사용 및 사용 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환경 오염 물질 등을 식별·관리하고,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친환경 포장재 적용 등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용 이후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한다.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 정책

제정일자 2023.06.16 | 개정일자[1] [1차] 2026.04.30

무림SP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산림파괴 예방 및 지역사회의 산림보호에 노력한다.

생물다양성 보호 일반원칙

1. 생물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요한 관리 및 개선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친화적 기술과 제품 개발에 노력한다.
5.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
6.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생물다양성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7. 공급망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급망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한다.
8.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 사회전반의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산림보호 일반원칙

1.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산림보호 이슈를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2. 산림보호를 위하여 자원 절약과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순환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벌채 등 산림자원을 사용한 경우 대체 산림 조성 등 산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노력한다.
5. 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식물종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사업, 산림보호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6. 공급망이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 및 보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급망과 함께 노력을 한다.

1) 기존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과 '산림보호 방침'을 통합함.

녹색구매방침

제정일자 2022.02.24 | 개정일자 [1차] 2026.04.30

무림SP는 지속가능한 녹색구매 활동을 통해 친환경 제품 생산에 노력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가치 창출 및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한다.

일반원칙

1. 녹색구매 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관련 법규준수, 사회적책임을 다한다.
2. 환경제품의 안정적인 생산 및 지속적 품질개선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공급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공급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친환경 공급망 구축에 노력한다.

실천방안

1.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며, 자재 등 구매 절차에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 녹색제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용 원재료 사용 여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공정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등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최대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한다.
3. 계열회사·협력사·공급사에도 녹색구매 실천을 장려하며, 협력사 및 공급사 선정 시 녹색구매 실천 여부를 고려한다.

※ 녹색구매 대상 제품 :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절감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환경인증 제품



SOCIAL

사 회

인권경영정책

제정일자 2023.03.23 | 개정일자 [2차] 2026.04.30

무림SP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과 경영활동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을 인지하며, 인권 및 노동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을 준수하고 고객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반원칙

1. 결사의 자유

- 헌법 및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노사협의회 등 노동 조합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

2. 차별금지

- 인종, 연령,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임신 및 결혼, 정치성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승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4. 강제노동 금지

-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5. 아동노동 금지

-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은 고용하지 않는다.

6. 근로조건 준수

-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한 정규,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등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한다. 또한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7. 안전 및 보건 관리

-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임직원 보호에 노력한다.

8.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 기준을 수립 및 운영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9. 공급망 인권경영 관리

- 공급망의 인권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공급망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10. 고객 및 지역사회 인권보호

경영활동 과정에서 고객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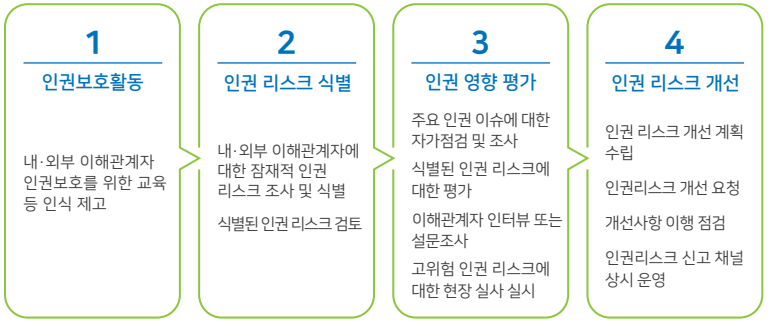
1.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 의지를 담은 규정을 제정하고, 인권경영과 관련된 방향을 설정한다.

2.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3. 고충처리 채널 및 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인권 침해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되고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5. 경영활동으로 인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ESG추진팀 주관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를 실시하고, 조직문화 내재화 및 제도개선활동 등을 통하여 실질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인권보호활동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식교육, 고충처리채널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2)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자가점검 및 조사 등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며, 고위험 인권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점검한다.

(3) 개선활동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인권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인권 리스크 완화 조치 등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안전경영정책

제정일자 2022.01.13 | 개정일자 [1차] 2026.04.30

무림SP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편의에 최적화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일반원칙

1. 안전제일

- 안전보건 및 관련 제반활동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2. 사람중심

-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사람 중심의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3. 현장중심

-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철저한 개선활동으로 현장중심의 안전경영을 추구한다.

4. 자율안전

- 지속적인 안전·기술 교육과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안전관리의식을 고취하며, 이를 통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5. 책임경영

- 무사고·무재해를 통한 안심일터 조성 및 구성원의 건강보건을 위해 최적의 자원을 제공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일련의 책임을 다한다.

실천방안

1. 안전경영 시스템 국제표준규격인 ISO 45001인증을 취득 및 유지하며, PSM(공정안전관리) 운영을 준수한다.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한다.
3. 이사회 및 경영진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5. 협력사, 공급사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관하여 소통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산업재해사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계획을 마련한다.
7. 안전보건 유해·위험요인을 매년 1회 이상 안전운영부 주관으로 식별·평가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1	2	3	4
안전경영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실시	개선계획 수립·이행	사후 관리 및 교육
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 수립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 중요성과 인식 제고 외부 이해관계자 안전보건 관련 교육 지원	유해·위험요인 식별 및 사고 가능성·중대성 고려한 위험성 등급 결정 안전운영부 주관 반기 1회 정기적 위험성 평가 실시(필요 시 수시 시행)	부서별 위험성 평가 결과 리뷰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및 보완 고위험 사항 즉시 시설 개선 진행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작업표준 반영	안전교육, OJT교육 등 안전관리 변경항목에 대한 작업표준 숙지 작업표준 준수 통한 안전사고 예방

8. 안전보건 관련 의견 및 개선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운영한다. 접수된 의견 및 제보 사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제보자 보호 및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공급망관리정책

제정일자 2024.04.01 | 개정일자 [2차] 2026.04.30

무림SP는 협력사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일반원칙

1. 사업 활동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2. 공급업체, 협력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급망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안전·인권·윤리 관련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공급망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실천방안

1. 공급망 선정 및 운영

- 신규 공급망 선정 시 구매 경쟁력과 함께 환경·안전·인권·윤리 등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공급망 관련 법규 및 회사 기준을 준수하는 공급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2. 책임 있는 원·부자재 구매

- 녹색제품 및 친환경 원·부자재 구매를 우선 검토하며, 원·부자재 구매 과정에서 자원절감, 재활용 가능성 및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
-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원·부자재 구매를 지양하며, 목재 제품을 포함한 원자재는 관리된 출처로부터 조달하도록 노력한다.

3. 공급망 ESG 실사 및 리스크 식별·대응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ESG추진팀 주관으로 공급망 ESG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1) 공급망 ESG 자가점검

ESG 자가점검은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실시한다.

공급망의 ESG 자가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ESG 평가 및 실사

공급망 ESG 자가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위험요소를 확인한다.

필요 시, 고위험 공급망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3) 위험요소 개선활동

공급망 ESG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공급망의 ESG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선활동을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금융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4. 지속적인 소통 강화

- 공급망 ESG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정책 및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공급망을 대상으로 ESG 관련 정보 공유 및 소통 활동을 추진한다.
- 공급망의 고충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정일자 2024.04.01 | 개정일자 [1차] 2026.04.30

무림SP는 정보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고객과 임직원 및 협력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반원칙

1.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핵심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보자산을 보호하여 경쟁력 확보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임직원은 스스로 정보보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3. 임직원은 정보보호를 생활화함으로써 정보보호문화로 정착시킨다.
4.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실천방안

1.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며, 보안사고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 보안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구축 및 운영하고 정보보호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를 실시한다.
- 임직원에게 정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제공하고 관리점검체계를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보호활동을 실시한다.

2. 개인정보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 임직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3. 임직원 인식 제고

-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GOVERNANCE

지배구조

윤리경영정책

제정일자 2020.08.01 | 개정일자 [2차] 2026.04.30

무림SP는 윤리적 경영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여기며, 고객·지역사회·근로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윤리경영방침

1. 법률적 책임

사회가 정한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을 추구한다.

2. 윤리적 책임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기준을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 있는 기업을 추구한다.

3. 경제적 책임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정당한 수익 창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을 추구한다.

4. 사회적 책임

기부, 자원봉사, 사회적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추구한다.

윤리헌장

종이의 국산화라는 기치 아래 事業報國의 이념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지산업을 선도해 온 무림SP는, 생활에 가치를 더하는 펄프·제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무림SP 모든 임직원은 건강한 욕심을 핵심가치로 마음에 새겨,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할 것을 다짐합니다.

윤리실천강령

1. 건강한 욕심을 가진 무림인으로서 원칙을 준수하며 바르게 행동한다.
2.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에게 보답한다.
3.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하여 행동하며,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4.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금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
5. 공정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며, 선의의 경쟁으로 경쟁사와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6. 정직과 신뢰로 상호 존중하며, 무림SP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7. 직위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사익추구의 기회로 이용하지 않는다.
8.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에게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하지 않는다.

윤리행동지침

1. 개 관

- **목 적**
 본 행동지침은 무림SP 임직원의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임직원의 적절한 행동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용어의 정의**
 - 금전 또는 금품이라 함은 현금,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의 일체를 의미한다.
 - 향응 또는 접대라 함은 음식 및 주류 제공, 스포츠, 문화 등의 수혜를 의미한다.
 - 편의라 함은 금전, 향응 제공을 제외한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 이해관계자라 함은 영리목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상대방을 일컫는다.

MOORIM 무림SP

2. 금품 수수 등 행위 금지

- **금전 수수**
 - 이해관계자가 금전 제공 시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받게 된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금전을 반환 못한 경우, 이를 윤리담당부서에 신고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ㄴ 금전 수취인 명의로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앞으로 송금
 - ㄴ 윤리담당부서에 금전 반환의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선물 수수**
 - 이해관계자가 선물 제공 시 정중하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단,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이나 판촉물은 선물로 보지 아니한다.
 - 임직원 자택으로 선물이 배송 되었거나, 선물 수령 즉시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에 수령한 선물과 해당 사실을 전달토록 한다.
 - 수수한 선물에 대한 정확한 시가 환산이 어려울 경우, 윤리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른다.

- **경조금**
 -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경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아래와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조금 수령 행위는 허용된다.
 - ㄴ 경조금 : 본인 포함한 직계가족 경조사에 한해 개인 10만원, 법인 20만원 이하
 - ㄴ 경조 선물 : 경조 사유에 따라 통상적 관습에 따라 행해지는 선물(돌반지 1돈 한도)
 - ㄴ 진급 및 영전 등 축하의 의미로 제공된 화환
 - 이해관계자에게 경조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동료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 **회식 비용 등의 전가행위 금지**
 -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서 회식 등의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이해관계자에서 비용을 계산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고, 이미 계산을 마치고 결제 취소가 불가한 경우 윤리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향응 및 접대**
 -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 건전한 오락과 같은 관습적인 접대를 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는 인당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업무협조를 위한 모임이 금지된 접대 행위(유흥업소, 사행성 도박장 등)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거절하여야 한다.
 - 회사가 승인한 공식적인 행사 또는 부서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 **편의제공**
 - 이해관계자에게 편의 제공(숙식, 차량 운전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공된 편의 내용이 관습상 허용되는 수준이며 일반에게 제공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용에 편승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 외의 경우 편의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협찬/찬조 제공**
 -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등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물품 등의 협찬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통보하되, 찬조 금품 등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업무 유관성이 있고 회사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금전대차, 자산거래 등 행위 금지**
 - 임직원 및 그 직계가족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부채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실질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취업 청탁 등 행위 금지**
 -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또는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고용 주선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은 경우 즉시 소속 부서장 및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주식 취득 등**
 -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회사 주식의 취득 및 보유는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윤리담당부서에 신고 후 즉시 처분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 이미 취득한 주식은 윤리담당부서에 고지 후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공정한 기회 부여**
 - 특정 회사를 선정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한다.
 - ㄴ 상당한 이유없이, 거래 지역과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 ㄴ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품질 또는 거래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ㄴ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견적 평가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부당행위 금지**
 - 임직원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되, 아래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금지된다.
 - ㄴ 계약기간 도중 상대방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가격, 수량, 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 ㄴ 계열회사를 포함한 특정 회사에게 혜택을 주고자 염가로 판매하거나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
 - ㄴ 업무상 과실을 숨기거나 줄이고자 이해관계자에게 계약 외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
 - ㄴ 경쟁업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가격담합 등 행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 ㄴ 하청업체 및 거래처 직원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거나 기술을 도용하는 행위

4. 회사 자산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회사 자산의 사적 이용 금지**
 - 회사의 모든 자산은 사적 이용을 금지하며, 사적 이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직위, 직무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다른 곳에 전용하는 행위 등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한 경비에 한해 사용을 허락하며 사적 이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는 퇴폐업소 출입 및 사행성 오락실 등 비용 지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실천방안

1.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행위 및 윤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며, 관련부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실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지속적으로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4. 임직원은 윤리경영방침 및 윤리실천강령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공정거래정책

제정일자 2024.04.01 | 개정일자 [1차] 2026.04.30

무림SP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을 하며, 거래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일반원칙

1. 자유경쟁 추구

-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거절, 중단, 또는 거래내용 및 조건의 제한을 금지한다.
- 협력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의 요구를 금지하며, 협력사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승인 하에 사용한다.

2. 법규의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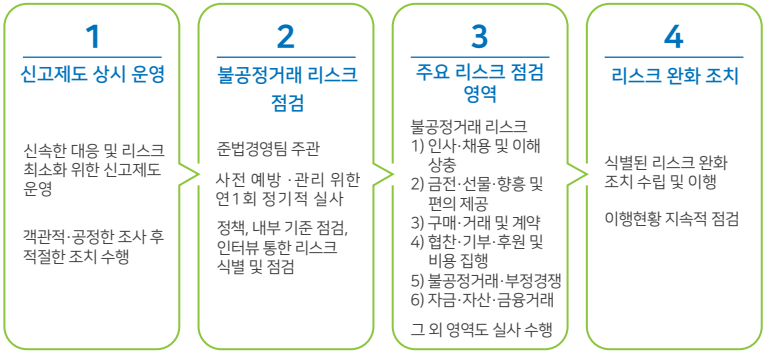
-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과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한다.
-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를 금지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내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철저히 금지하며,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 및 제도를 통하여 즉시 신고한다.

3. 동반성장

- 구비된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협력사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며, 협력사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모든 거래의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경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협력사가 임직원 인권 보호,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및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

실천방안

1.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며 공정거래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는다.



2.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며, 관련부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실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